

I 사전당첨자 서류제출 일정 I

구분	일자	신청장소
서류제출 기한	2022.09.02(금) ~ 2022.09.08(목)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6-7 영종 A41BL 한신더휴 분양 홍보관

- 사전당첨자의 자격검증 서류제출을 위한 주택홍보관 방문 시 동반 1인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외 동반 1인까지 입장 가능)
- 사전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정당한 당첨자임이 확인되지 않아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방문 및 계약체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종하늘도시 A41BL 한신더휴 홈페이지(http://www.yj41-thehue.com)를 통해 '사전방문예약제'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영종하늘도시 A41BL 한신더휴 홈페이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사전당첨자 제출 서류 I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기준	주요 확인 사항
	필수	해당			
공통	○		당첨자 자격요건 서약서	본인	- 현장접수처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현장접수처 비치
	○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발급용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 상 도장 대조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세대원 및 부양가족 관계 확인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연속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기록대조일:본인 생년월일~모집공고일)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해외 체류 단신 부임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또는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기타/당해지역 청약 시 복무기간 확인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소속(건강보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해외기업 소속(현지 발급서류, 번역공증)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세대원	- 등본상 세대원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 미성년 자녀 모두 제출
신혼 부부	○		여권, 비자 발급내역 등	세대원	- 신청자의 해외체류기간 내 세대원 해외체류 시 동일 국가 체류여부 추가 확인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현장접수처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기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신청자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		소득증빙서류		- 사전 당첨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 모두의 소득입증서류)
	○		비사업자 확인각서		- 현장접수처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사실증명원(신고소득사실없음)		- 비사업자 확인각서를 제출한 무직자는 신고사실 없음을 확인(전년도 기준)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부동산 자산 33,100만원 이하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배우자 전혼자녀 부양가족 산정 시(신청자 본인 등본 등재 한함)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전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외 불가) 제출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	- 현장접수처 비치, 임신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대리인 추가 서류	○		위임장	본인	- 현장접수처 비치(청약신청자 인감도장 날인 확인)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본인발급용 확인(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대리인 본인 확인
	○		대리인 도장	대리인	- 서명가능
주택관련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자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해당자		- 무허가 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해당자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자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사전당첨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12.)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인감증명서 용도 : 주택공급 계약 체결용))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함.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부)